

1. 개정이유

산업단지는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에 따라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생활소음·진동에 대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만을 규제하고, 공업지역 등 다른 용도지역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

그러나,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은 경업공 그밖의 공업과 함께 주거기능과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이 함께 입지하고 있어 소음·진동에 따른 규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,

따라서,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을 현재와 같이 규제제외 지역으로 유지하되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준공업지역의 용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온한 주거와 상업,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,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소음·진동 규제지역 지정 권한 강화(안 제20조)

- 1) 소음·진동 규제에서 제외된 산업단지 내 준공업지역에 대해 용도계획 등 입주 특성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시 조례로써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함

나. 특정공사 사전신고 변경대상 확대(안 제21조)

- 1) 특정공사 시행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신고 대상에 ‘사업장 명칭

및 대표자'를 추가하고, '특정공사기간의 연장'을 '특정공사기간의 연장(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)'로 명확히 함

다. 오타 수정 등 미비점 정비(안 제7조의2, 제21조)

- 1) 본문 오기 '도지자'를 '도지사'로 수정(안 제7조의2제3항)
- 2) 이전 법률 개정으로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'법 제22조제3항'을 '법 제22조제5항'(안 제21조제6항 내지 제7항)으로 하고, '법 제22조제4항'을 '법 제22조제6항'으로 수정(안 제21조제8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“시·도시자”를 “시·도지사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”을 “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
-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
-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중 생활소음·진동으로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

제21조제4항제2호 중 “특정공사 기간의 연장”을 “특정공사 기간의 연장(시간의 연장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제3항제1호”를 각각 “법 제22조제5항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2조제4항”을 “법 제2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6.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의2(소음지도의 작성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시·도지사는 소음지도의 작성을 마친 때에는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작성된 소음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, <u>시·도시자</u>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소음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.	제7조의2(소음지도의 작성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시·도지사</u>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)	제20조(생활소음·진동의 규제)
①법 제21조제1항에서 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.	①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. 다만, 산업단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	1. ----- ----- -----. ----- <u>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</u> ----- -----

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2. ~ 4. (생 략) ②·③ (생 략) 제21조(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) ① ~ ③ (생 략) 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“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 다. 1. (생 략) 2. <u>특정공사 기간의 연장</u>	--.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 른 주거지역 나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 른 상업지역 다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 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중 생활소음·진동으로 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장·군수·구청장이 조례 로 정하는 지역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21조(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특정공사 기간의 연장(시간</u>
--	--

3. ~ 5.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
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
준은 별표 10과 같다.

⑦법 제22조제3항제1호 단서에
따른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
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와 같다.

1. 공사지역이 협소하여 방음벽
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란
한 경우

2. 도로공사 등 공사구역이 광
범위한 선형공사에 해당하는
경우

3. 공사지역이 암반으로 되어
있어 방음벽시설의 사전 설치
에 따른 소음 피해가 우려되
는 경우

4. 건축물의 해체 등으로 방음
벽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기 곤
란한 경우

5. 천재지변·재해 또는 사고로

의 연장을 포함한다)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의
변경

⑤ (현행과 같음)

⑥법 제22조제5항제1호 -----

-----.

⑦법 제22조제5항제1호 -----

-----.

1. -----

2. -----

--

3. -----

4. -----

5. -----

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복구공사의 경우 ⑧<u>법 제22조제4항</u>에 따른 저감 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4. (생략)	----- ----- ⑧<u>법 제22조제6항</u>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--	---